# 다산 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2B, 34A, 41A, 51A) [모집공고일 2026.11.13.]

## 청약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인증서(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 필요]

- **온라인접수**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진행(※모바일 청약 불가)
- **현장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에 한하여 방문접수**

※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로 현장접수 가능**하므로, 신청자 본인 외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주소지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만 신청

▫ 청약신청서 제출 후 청약내용 수정 및 취소 : **청약신청일 접수마감시간(18:00) 전까지만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청약 납입회차는 통장에 표시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청약신청 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 할 경우 청약배점은 0점 처리되오니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부적격 처리 주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순위별로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청약신청 자격의 판단 기준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3.]**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타 공사(LH, SH 등) 포함

▫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계약 후 '입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삭제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 031-510-718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주민공동시설1층)

▫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착오 및 부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미숙지, 착오 신청 또는 가점사항 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는 장시간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공급개요 ····· 3p

2. 공급일정 ····· 4p

3. 공급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5p

4. 신청자격 ····· 6p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등 ····· 8p

6. 신청순위 및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11p

7. 배점기준표 ····· 12p

8.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13p

9.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15p

10. 제출서류 안내 ····· 16p

11. 입주자격검증 절차 및 소명 ····· 19p

12. 예비입주자 발표 및 순번조회 ····· 20p

13. 유의사항 ····· 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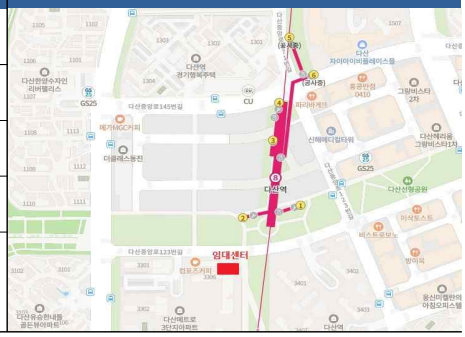
14.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23p

■ 공사양식제출서류[붙임1~6] ····· 25~33p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1 공 급 개 요

## ▌다산 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개요

| 구 분 | 내 용 | 위치도 |
|---|---|---|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  |
| 아파트명 | 다산메트로3단지 | |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29층, 6개동 | |
| 공급유형 | 국민임대 755세대, 영구임대 502세대, 총 1,257세대 | |
| 주택형(㎡) | **국민임대(32B, 34A, 41A, 51A)**<br>영구임대(26A, 26B) | |

##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
| ‘26.11.13.(금) | [1순위]’26.11.23.(월)<br>[2순위]’26.11.24.(화)<br>[3순위]’26.11.25.(수) | ‘26.12.04.(금)<br>(17:00 이후) | ‘26.12.07.(월)<br>~<br>‘26.12.09.(수) | ‘27.04.30.(금)<br>(17:00 이후) |

※1순위 접수 마감시 2,3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접수 마감시 당일 18시 이후 G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

##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격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4.신청자격]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2026년도 기준) *상세내역 (7페이지) 확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70%이하[**1인(90%) **3,432,027원 이하,** 2인(80%) **4,693,016원 이하]**
- **자산**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주 택 명 | 다산 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
|---|---|
| 주 택 관 리 번 호 | 2026000594 |

▫ 납입회차는 통장에 표시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급용] 일반공급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2021.09.01.)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상세 공급일정,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 급 일 정

## ▌공급일정

| 신청순위 | | 신청접수 |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기간 | 당첨자 발표 |
|---|---|---|---|---|---|---|---|
| | | 인터넷 청약 | | 현장 | | | |
| 1순위 | 50㎡ 미만 | 당해지역 거주자 | '26.11.23.(월) 10:00~18:00 | 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10:00 ~ 16:00<br>점심시간 11:30~13:00<br>**※신청자가 속하는 신청순위 일자에만 방문접수 가능**<br>※고령자(만 65세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현장접수가능** | '26.12.04.(금) (17:00 이후)<br>GH주택청약센터 (https://apply.gh.or.kr)<br>'서류제출대상조회' | '26.12.07.(월) ~ '26.12.09.(수)<br>※ 등기우편제출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 '27.04.30.(금) (17:00 이후) |
| | 50㎡ 이상 | 청약24회 이상 납입 | | | | | |
| 2순위 | 50㎡ 미만 | 인접지역 거주자 | '26.11.24.(화) 10:00~18:00 | | | | |
| | 50㎡ 이상 | 청약 6회 이상 납입 | | | | | |
| 3순위 | 50㎡ 미만 | 1,2순위 아닌자 | '26.11.25.(수) 10:00~18:00 | | | | |
| | 50㎡ 이상 | | | | | | |

### ※ 일반공급 순위 기준 (모집공고일 2026년 11월 13일 기준)

| | |
|---|---|
| 32B<br>34A<br>41A | - (1순위)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br>- (2순위)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br>- (3순위) 1, 2순위 외 지역 거주자 |
| 51A |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br>-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br>-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신청접수 일정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접수 일자에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됩니다.

□ 일반공급 각 순위 신청일에 각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1.23.(월)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1.24.(화)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 이후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에 게시하며, 임대센터에서도 유선 안내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서 제출 후 신청당일 접수 마감시간(온라인접수 18:00마감) 전까지만 **신청내용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수정불가), **신청당일 이후에는 신청내용 조회만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현장접수일정 [2026.11.23.(월) ~ 11.25.(수) 10:00~16:00]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에 한하여 현장접수(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를 꼭 준비하셔야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선순위 마감시 후순위 신청접수도 마감되오니 2,3순위 신청자께서는 필히 신청접수 마감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시 신청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한 결과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장접수 유의사항(14페이지) 참고]

| 접수일 | 방문가능 대상 | 현장접수처 |
|---|---|---|
| [1순위] 2026.11.23.(월) | ① 만65세이상 고령자<br>② 중증장애인(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 **다산 메트로3단지 임대센터**<br>(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주민공동시설 1층) |
| [2순위] 2026.11.24.(화) | | |
| [3순위] 2026.11.25.(수) | | |

# 3 공급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 | | 구조 / 난방 | 최초 입주 | 공급호수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 건설 호수 | 공고일기준 예비자수 | 예비자 모집호수 |
| 다산 메트로3단지 | 32B | 32.5579 | 16.4834 | 19.6454 | 68.6867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21년 3월 | 250 | 9 | 40 |
| | 34A | 34.9749 | 17.6049 | 21.1042 | 73.684 | | | 297 | 13 | 40 |
| | 41A | 41.8732 | 20.8119 | 25.2667 | 87.9518 | | | 112 | 14 | 15 |
| | 51A | 51.8043 | 25.1009 | 31.2592 | 108.1644 | | | 96 | 6 | 25 |
| **합 계** | | | | | | | | 755 | 42 | 12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 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생활 소음과 같은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주택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 | 임대보증금(원) | |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 |
| 다산 메트로3단지 | 32B | 15,762,000 | 3,152,000 | 12,610,000 | 174,380 | (+)19,000,000 | 34,762,000 | 63,550 |
| | | | | | | (-)10,000,000 | 5,762,000 | 203,540 |
| | 34A | 16,803,000 | 3,360,000 | 13,443,000 | 183,110 | (+)21,000,000 | 37,803,000 | 60,610 |
| | | | | | | (-)11,000,000 | 5,803,000 | 215,190 |
| | 41A | 30,497,000 | 6,099,000 | 24,398,000 | 231,270 | (+)25,000,000 | 55,497,000 | 85,440 |
| | | | | | | (-)22,000,000 | 8,497,000 | 295,430 |
| | 51A | 42,320,000 | 8,464,000 | 33,856,000 | 292,150 | (+)24,000,000 | 66,320,000 | 152,150 |
| | | | | | | (-)32,000,000 | 10,320,000 | 385,48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20%)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 완료 후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4 신 청 자 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자격검증 대상)

***분양권 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분양권 및 입주권 등)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음[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p23 참고]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 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br>•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 | | |
|---|---|---|
| 외국인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br>***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br>-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br>-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br>-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자격검증 예외) |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까지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 세대구성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참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만 신청가능**
**(단, 1인 가구 90% 이하, 2인 가구 80% 이하 적용)**

|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 참고사항 |
|---|---|---|---|---|---|
| | 월평균 소득기준(원) | | +10% | +20% | |
| 1인 | 90% | 3,432,027 | - |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br>*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2인 | 80% | 4,693,016 | 5,279,643 | - | |
| 3인 | 70%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 4인 |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 5인 |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 6인 |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 7인 |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 **소득기준 가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사목에 따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비율에 **자녀 수 등에 따른 가산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구 분 | 소득기준 가산 |
|---|---|
|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 +10% |
| 2)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 |
| 3)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 |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등을 합산한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구 분 | 총자산가액(만원) | | 자동차가액(만원) | |
|---|---|---|---|---|
| **기 본** | **34,500 이하** | | **4,542 이하** | |
| **1)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명(110%) | 37,900 이하 | 1명(110%) | 4,996 이하 |
| | 2명 이상(120%) | 41,300 이하 | 2명 이상(120%) | 5,451 이하 |
| **2) 1)의 가구 중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120%)** | 41,300 이하 | | 5,451 이하 |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의 수를 기준**으로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의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가액 산정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 가산 비율 인정 시 유의 사항

□ **기준일 : 2023년 3월 28일(가산 대상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녀에 한함.)**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산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의 가산 비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 대상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자산요건의 가산 비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출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가산 대상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아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생한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br>●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br>●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br>●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br>●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br>*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br>●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br>-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br>●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br>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br>-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br>-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br>-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br>-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br>-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 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구분 | | 산정방법 |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r>●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r>-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br>-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br>● 자동차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br>●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br>●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br>●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일 기준 액면가액<br>● 연금저축 :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br>● 보험증권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br>●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br>●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br>●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br>●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br>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br>나.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 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br>● 건물이 완공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b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 인정 불가)<b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br>●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br>●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에 따른 부채 인정 항목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br>●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외 개인 간 사채 인정 불가)<br>●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r>●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가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br>-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br>-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br>● 자동차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br>-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br>-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br>-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br>-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건설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br>-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행복e음(자활) |
| | | 공공일자리소득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한국고용정보원(공공)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br>*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br>-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br>-**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br>-**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br>-**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지방세정가액<br>-국토부 차적정보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br>-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br>-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국토부 차적정보 |

# 6 신청순위 및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순위(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판단

| | |
|---|---|
| 32B<br>34A<br>41A | - (1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br>- (2순위)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br>-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50㎡미만 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신청순위(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

| | |
|---|---|
| 51A |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br>-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br>-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그밖의 사항 나목

| 구 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공급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 → 배점 합산 → 추첨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같거나 위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시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 없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7 배점기준표

| 구 분 | 3점 | 2점 | 1점 |
|---|---|---|---|
| ① 신청자 나이(만 나이 기준) |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br>만50세 미만 | 만30세 이상<br>만40세 미만 |
|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포함)<br>- 「민법」상 19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br>※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 전입일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13.)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br>5년 미만 | 1년 이상<br>3년 미만 |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 | 60회 이상 | 48회 이상<br>60회 미만 | 36회 이상<br>48회 미만 |
| ⑤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 및 손자녀 포함)<br>※ 만19세미만(2007.11.14. 이후 출생자녀)<br>※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br>-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br>※ **손자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에만 인정** | 3자녀 이상 | 2자녀 | - |

⑥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여부

※ 근로여부 확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점

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나)「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⑨ 사회취약계층 ※ (1)~(3) 중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 인정**(최대 3점 부여) : 3점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 가목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나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목)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목)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목)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카목)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GH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감점 기준 | 감점 점수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 기간산정 기준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양도인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 기준일임.

**※ 단,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차인이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감점 배제**

# 8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인터넷 청약접수 | 서류접수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우편접수) | 입주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
| 2026.11.23.(월) ~ 2026.11.25.(수) (10:00~18:00) | 2026.12.04.(금) (17:00 이후) | 2026.12.07.(월) ~ 2026.12.09.(수) (등기우편) | 약4개월 소요 | 2027.04.30.(금) (17:00 이후) |
| GH주택청약센터 | GH주택청약센터 | 우편접수 :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 사회보장정보망 | GH주택청약센터 |

※ 청약 신청자는 **순위별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청약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불가

①인증서 준비 → ②GH주택청약센터 접속 → ③인증서로그인 → ④인터넷 청약신청 → ⑤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금융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GH주택청약센터 접속(https://apply.gh.or.kr)**

**③ 인증서 로그인**(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 → 청약신청 클릭

**④ 인터넷신청**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비스 -청약신청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 |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 신청완료 후 접수증 발급 가능 [GH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신청내역 조회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GH주택청약시스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남양주시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청약신청에 필요한 **신청자 개인의 정보(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입력 등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세대원 등록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 임박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가능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취소 후 재신청 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령자(만65세이상)에 한하여 현장접수(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필수,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만65세이상) 미해당자는 현장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인증서(공동/금융/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및 모바일신분증)를 꼭 준비하셔야 현장접수 가능하므로, 신청자 본인 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시면 보다 원활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남양주시 최종 전입일(1순위 신청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일 배점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 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0㎡ 이상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순위확인서의 납부 횟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희망자는 청약 신청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신 후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순위별 신청일자를 필히 확인하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를 마감하는 경우 후순위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접수 마감 여부를 필히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경우 접수일 당일 18:00 이후 G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안내 될 예정입니다.

□ **대행접수자는 추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행접수 시에는 접수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 임대센터 위치안내

■ **위치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 **오시는길 : 다산메트로3단지 3306동 옆 주민공동시설1층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지하철 이용] 경의중앙선 구리역 하차 -> 8호선 환승(별내역 방면) -> 8호선 다산역 하차 -> 다산역 2번 출구

[버스 이용] 도농역에서 34번 승차 -> 한양수자인2차 정류장 하차 -> 다산메트로3단지까지 도보158m
도농역에서 76번 승차 -> 다산메트로3단지 정류장 하차 -> 다산메트로3단지까지 도보176m
도농역에서 땡큐11번 승차 -> 다산역3번출구 하차

**※다산역 2번 출구/다산 선형공원/다산 한양수자인 1·2차에서 하차시 다산메트로3단지 도보 이동 용이**

# 9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GH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상단 [청약서비스] 클릭 → [서류제출자 당첨조회] 클릭 →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서류제출대상자]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7. 배점기준표(12페이지) 참고]에 따라 선정되며,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2배수 내외**로 발표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에 따라 주택형별 선정 배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 서류제출 기간 : 2026년 12월 07일(월) ~ 2026년 12월 09일(수)

□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2026.12.09.(수)까지 발송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누락 및 기재사항 미비로 인한 탈락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서류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제출하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므로,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도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오니, 부적격 당첨에 따른 당첨 취소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문(10. 제출서류 안내)을 참고 및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주민공동시설1층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우편번호 : 12248)**

# 10 제출서류 안내 [2026년 11월 13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11.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지정된 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기본서류

| NO |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필수)<br>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필수)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br>-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성명을 정자로 작성(사인, 도장 불가)**<br>-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br>- ① 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② 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br>**※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며, 동의서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 내용이 없는 경우 부적격(자격검증 불가) 처리됨** | 신청자 작성 공사양식 [붙임1~3]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붙임3-필수) | •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타 공사 포함)는 자동 탈락 처리됨(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r>-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br>*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만 인정)<br>•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br>•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br>•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
| 대상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1순위 신청자**만 제출<br>-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br>•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이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br>-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임신진단서<br>입양관계증명서 | •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월평균 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br>• 태아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br>-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br>-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센터 |

## ▌배점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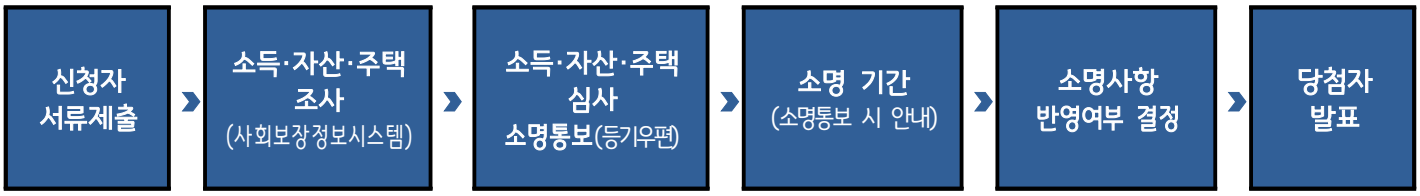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필수서류) | 행정복지센터 |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제출 서류 없음<br>※청약신청 접수 마감 후 청약홈에 자료요청하여 일괄 부여 예정 | |
| ⑤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br>※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 ⑥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 ⑥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행정복지센터 |
| ⑦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br>**※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불가 시 점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①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가입분)<br>③ 제조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중소벤처기업부<b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br>등기소<br>국민건강보험공단 |
|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br>나)「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자<br>*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br>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가)건설근로자<br>공제회<br>(1666-1122)<br><br>나)근로복지공단 |
| **⑨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 |
|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유족제외)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br>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성평등가족부 |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br>정부24홈페이지 |
|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br>정부24홈페이지<br>북한이탈주민포털 |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내역(공고일 이전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증명서<br>**[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br>행정복지센터 |
| - 카.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기관 |
| **⑨ (2)**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br>행정복지센터 |
| **⑨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 - |

## ▌기타 보완서류 <내용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 | 비 고 | 발급처 |
|---|---|---|
| 예비신혼부부<br>신청확인서 및<br>가구구성확인서 등 |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br>※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자녀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 제출 불가) | 행정복지센터<br>공사양식[붙임4~5] |
| 소득기준 가산<br>인정서류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사목에 따른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br>- 출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br>-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br>-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행정복지센터<br>의료법에 의한<br>의료기관 등 |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br>• 월평균 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 가족수 또는 미성년 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의료법에 의한<br>의료기관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r>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r>※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이후 사회보장정보원 자격검증 시점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br>정부24 홈페이지 |
| GH국민임대주택<br>계약이력으로 인한<br>감점 적용 배제 관련<br>서류 | • **GH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br>- 공통서류 : 계약사실확인원<br>-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br>-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현장접수 대상자<br>청약신청<br>대행업무 확약서 | • 현장접수 대상자에 한하여 청약신청 대행업무 확약서 작성 | 공사양식[붙임6] |

# 11 입주자격검증 절차 및 소명

## ▌입주자격검증 절차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입주자격 검증 자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에 의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절차는 서류제출 후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등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격검증에 따른 소명

□ 소득·자산·자동차·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명기간 내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이 확인 된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대상자에 대한 소명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당첨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기간 내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명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 내 소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12 예비입주자 발표 및 순번조회

## ▌예비입주자 발표 〔2027. 4. 30.(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 17:00 이후 GH주택청약센터 (http://apply.g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당첨자 확인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당첨자목록』**

*** 예비순번 조회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계약서비스』 → 『예비입주자조회』**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예비입주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 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때에는 당첨자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는 유선 연락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안내는 입주가능세대(공실) 발생시 해당 임대센터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안내 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임대센터에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 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회 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예비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공임대주택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동일유형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입주 전 제출서류 등 유의사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출생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주 후 제출서류 등 유의사항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출생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3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갱신계약 등</td><td>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br>
• (갱신 시) 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br>
• ‘24.1.1이후 출생(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 태아포함)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할증 적용하여 재계약 가능(자동차가액 초과시 불가). 단,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음.<br><br>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소득초과자의<br>최초갱신 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br>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tr>
<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br>또는 자산기준 초과</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d colspan="2">140%<br>*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
</table>
</td></tr>
<tr><td>임대조건 등</td><td>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br>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br>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주택 명도</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br>
• 우리 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중복 입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 또는 새로 입주하는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td></tr>
<tr><td>신청자격</td><td>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br>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br>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able>

| | |
|---|---|
|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 • 현장방문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방법 참조)<br>•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br>*** 세대 분리된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br>•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br>•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br>•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br>• 접수마감 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h.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br>•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br>•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br>•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br>•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br>•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 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br>• 전세자금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내 시설이용등** |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br>•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br>•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br>•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br>•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 |

## 14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 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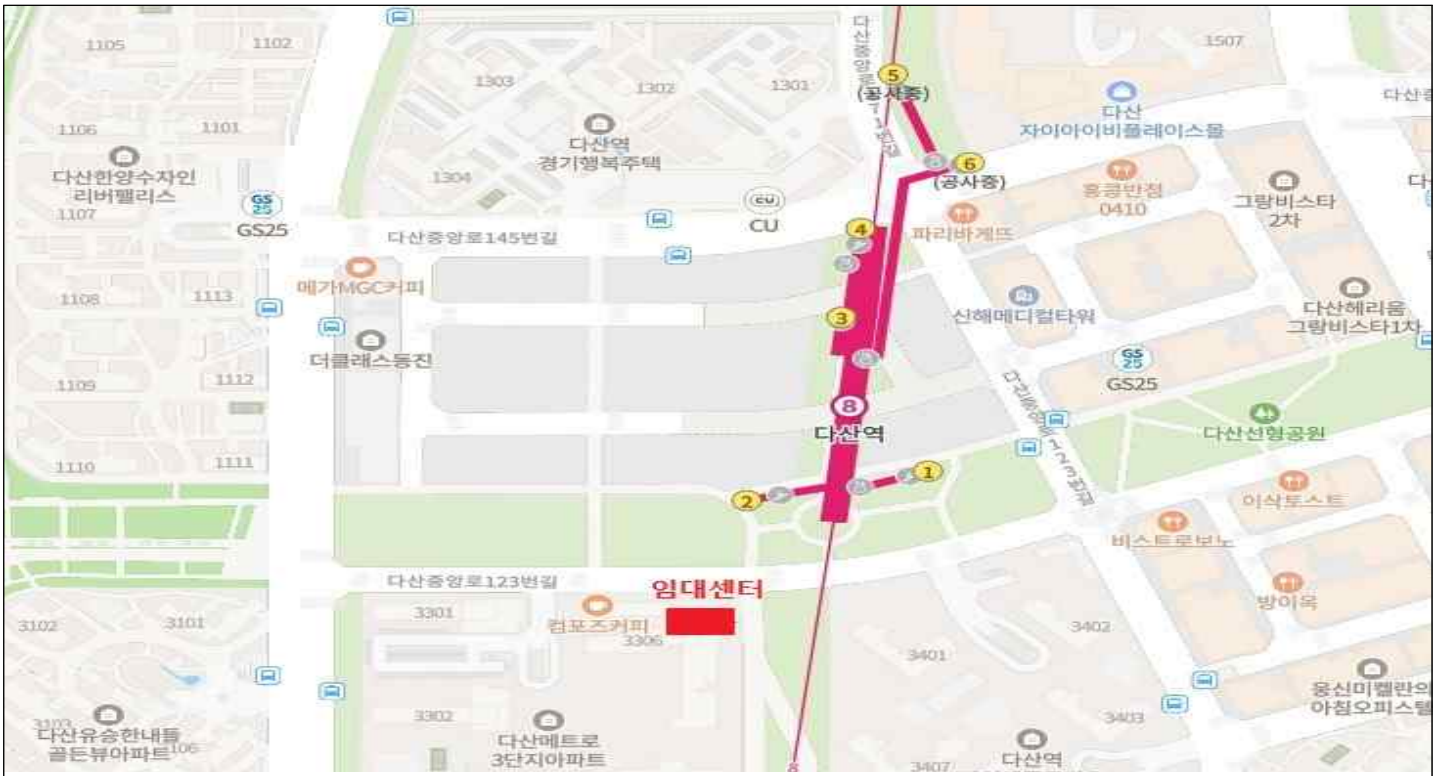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
|---|---|
| 당첨자 확인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당첨자목록 |
| 예비자 확인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계약서비스 → 예비입주자조회 |
| 인터넷 청약 | GH주택청약센터(http://apply.gh.or.kr) → 임대주택 청약신청 (모바일 신청불가) |

## ▌현장접수 임대센터 위치안내




■ 위치안내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 오시는길 : 다산메트로3단지 3306동 옆 주민공동시설1층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지하철 이용] 경의중앙선 구리역 하차 -> 8호선 환승(별내역 방면) -> 8호선 다산역 하차 -> 다산역 2번 출구

[버스 이용] 도농역에서 34번 승차 -> 한양수자인2차 정류장 하차 -> 다산메트로3단지까지 도보158m
도농역에서 76번 승차 -> 다산메트로3단지 정류장 하차 -> 다산메트로3단지까지 도보176m
도농역 땡큐11번 승차 -> 다산역3번출구 하차

**※다산역 2번 출구/다산 선형공원/다산 한양수자인 1·2차에서 하차시 다산메트로3단지 도보 이동 용이**

2026. 11. 13.

경기주택도시공사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장**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경기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br>-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br>-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br>-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br>-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br>- 공적연금 가입내역<br>- 건강보험 가입내역<br>-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br>-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br>- 사업자등록사항 | | |
|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경기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입주 사전방문·입주지원·하자관리 서비스 관련 업체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 |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 |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입주지원, 하자서비스 관련 위탁업자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서비스 | 성명·주소·유선·휴대전화번호 | |
| 하자보수 시공사 | 입주자 하자관리 서비스 | 성명·주소·유선·휴대전화번호 | |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 포함)한 사람 중 주거지원 필요여부 확인 | 성명·주소·유선·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 경기주택도시공사

#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임대센터장 귀하

**붙임2**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 - |
| 주 소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br>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br>(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br>(서명 또는 인)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예시 참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정자로 서명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예시 ]

**1. 점선안에 정자체로 작성하고, 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2.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 1장 추가하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홍길동 | 501225 - 1234567 |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OO로 ~ (주소 끝까지 기입할 것)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본인 | 홍길동 | 501225 - 1234567 / 010-9999-8888 | 홍길동 | 홍길동 |
| 배우자 | 이영희 | 500122 - 2107070 / 010-7777-6666 | 이영희 | 이영희 |
| 자 | 홍OO | 190515 - 3333333 / - | 홍OO | 홍OO |
| 자 | 홍△△ | 210420 - 3333333 / - | 홍△△ | 홍△△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24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필수)

| | | | | |
|---|---|---|---|---|
| 확인자<br>(임차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본인(또는 배우자)은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임대센터장 귀하**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 연락처 :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공동 신청 | □ | 상기 신청인 (1), (2)는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에 공동으로 신청함 |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상기 신청인 (1), (2)는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혼인관계 | □ | 상기 신청인 (1), (2)는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20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임대센터장 귀하**

#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예정) | 비 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 | 동일세대 예정□ 분리세대 예정□ |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20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임대센터장 귀하

# 확 약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상기 본인은 다산메트로3단지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2026.11.13)에 대하여 GH청약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청약신청을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직원이 대리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직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의 인증정보**로 **G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의 확인 및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청약신청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의 가점항목 및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제출서류의 미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출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전산장비 사용 등의 어려움으로 직접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기 어려워 다산메트로3단지 임대센터 직원에게 인터넷 청약접수를 대리하여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접수된 청약신청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청내용 확인 및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대리 접수에 대하여 단순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 _____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위 대리인 지에이치자산관리 다산메트로3단지임대센터장 귀하**